의안번호	2211329
의 뢰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5. 8. 5.
추계번호	25A3699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2 (특수활동비 등의 관리 등)	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둠. 동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·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4조의2 (특수활동비 등의 관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특수활동비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(안 제44조의2 신설)

○ 다만 각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 세부집행지침 마련(제1항), 집행계획·집행결과보고서 작성·공개(제3항·제4항)의 경우 추가 재정소요 없이 현재 부처의 업무추진 범위 내에서 수행가능한 것으로 전제

- 심사위원회 운영 및 집행결과보고서 관련 별도 예산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15개 중 10개 기관에서 ‘해당 사항 없음’으로 응답함

❑ 2024년 결산 기준,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중앙관서는 총 15개로 이 중 약 10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됨

○ 2024년도 결산기준 특수활동비 집행기관 총 15곳 중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조사에 응한 10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현황은 다음 [표 1]과 같음

- 특수활동비 관련 자체 세부집행지침 수립: 9개 기관
- 특수활동비 관련 외부(기획재정부, 감사원) 지침 활용: 4개 기관
-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(외부전문가 미포함): 10개 기관
-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 작성: 8개 기관

[표 1] 특수활동비 규모 및 관리현황

(단위: 백만원)

부처명	특수활동비 ('24년 결산)	세부집행지침		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		집행결과보고서	
		자체	외부[1]	위원회 설치	외부전문가 포함	작성	공개
국무조정실	619	○	×	○	×	○	×
통일부	1,572	○	×	○	무응답	무응답	무응답
외교부	450	○	×	○	×	○[2]	×
법무부	7,209	○	×	○	무응답	○	×
국세청	2,711	×	○	○	×	○	×
관세청	329	○	×	○	무응답	무응답	무응답
경찰청	3,087	○	○	○	×	○	×
해양경찰청	8,188	○	○	○	×	○	×
감사원	1,519	○	○	○	×	○	×
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	111	○	×	○	×	○	×

주: 특수활동비 관리현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조사 요구에 회답한 12개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국회법상 비공개 대상인 정보사업으로 세부자료 제시 곤란) 및 국가안보실(현 정부 출범 이전 자료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으로 자료부재)를 제외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함
(2024년 결산기준,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중앙관서는 총 15개 기관임)
주 1) 기획재정부 "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" 및 감사원 "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"
2) 외교부는 집행결과확인서 생략확인증 작성
자료: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다만, 개정안에 따른 각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각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 관련 소요비용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

○ 각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 구성 인원, 연간 운영횟수 등에 따라

소요 비용의 편차가 존재할 것이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예측이 곤란함

❑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